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자체감사 결과

○ 감사기간: 2021. 10. 12. ~ 11. 11. (1개월)
○ 감사대상: 본청,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
○ 감사범위: 2019. 01. 01. ~ 2021. 09. 30.
○ 감사결과: 행정상조치 ○●건, 재정상 조치 □◎,◇◆□천원

Ⅰ 주요 지적사항

1)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

❍ 「홍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」 제7조에 의하면 “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.” 고 규정하고 있으며,

❍ 「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 제5조는 “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” 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18조제1항 및 「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」의 국내출장시의 여비지급 기준에 따르면, 근무지내 출장시 “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,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,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,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하고,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며, 운전원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.”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,

❍ ☆★○○에 대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출장여비 부정수급 자체감사 결과, ☆★건, ○●◎,◇◆□원의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.

2) 초과(시간외)근무수당 지급 부적정

❍ 「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7조 및 「홍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 제4조(당직의 구분)에 따르면 “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.”로 규정하고 있어 당직근무일 18시부터 익일 근무가 시작되는 09시까지는 당직근무시간에 해당하고

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도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(재택당직자 포함)는 지급제외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어 당직근무시간 중 초과근무를 인정해서는 아니되고

❍ 또한, 공직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읍·면위원회 간사·서기는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수당·사례금 등을 선거경비로 지원받고 있어 시간외근무를 인정해서는 아니된다.

❍ ▼▽▲△에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초과(시간외)근무수당 지급내역을 감사한 결과 당직근무자의 초과근무인정, 선거일 초과근무실시 등 초과(시간외)근무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Ⅱ 행정사항

○ 부서장은 지적사항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전파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강화